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 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검 토 보 고**

〈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 허브 협력사무소 설립〉
■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15008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요	3
2. 소요 비용 검토	14
3.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	17
4. 주요 내용 검토	24
5. 종합의견	40
※ 참고자료	4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일자 : 2025년 12월 8일
3. 회부일자 : 2025년 12월 11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의 설립 근거와 대한민국이 그 사무소와 사무소 소속 임직원 등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개발도상회원국의 기후 기술 및 관련 지식에 대한 접근과 그 교환을 촉진하려는 아시아개발은행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기능) 아시아개발은행의 개발도상회원국이 기후 기술 및 관련 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
- 나. (특권 및 면제) 아시아개발은행의 재산 및 자산에 대한 압수, 강제

집행, 수색, 몰수 등 면제

다. (재산 및 과세) 직접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등으로부터 면제

라. (금융·통신 편의) 자금·통화 등 구매·처분 자유, 통신수단 편의 제공 등

마. (분쟁의 해결) 우호적 협상 통해 해결하고, 필요시 중재위원회 회부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참고

나. 입법조치 : 해당없음

다. 협정 체결경위

- 2023. 8. 문안 협의 개시
- 2025. 4. 문안 타결
- 2025. 7. 29. 국무회의 의결
- 2025. 8. 22. 양측 서명(한국 서울, 필리핀 마닐라)

Ⅲ. 검토의견

1. 개 요

가. 비준동의안 제출 취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아시아개발은행의 대한민국 내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 Coordination Office; K-Hub 협력사무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사무소의 공관 및 그 소속직원에게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K-Hub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부분 >

(번역본)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은, ...
대한민국 서울에 현재 아시아개발은행 기술 지원으로 자금을 받는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이하 “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라 한다)를 개소하여 대한민국 내 아시아개발은행의 존재를 확립하는 협정 체결을 희망하며, ...

(영문)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to establish ADB's pres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by setting up the “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 Coordination Off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Hub Coordination Office”), funded currently by ADB technical assistance, in Seoul, Republic of Korea; ...

자료 :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 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술기후허브 협력사무소 개요

(1) 아시아개발은행 개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아·태지역 빈곤감축을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서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1966)」을 설립 근거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1966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수권자본금(Capital Subscription)¹⁾은 2023년 12월 기준 1,427억 달러 수준이고, 가맹국은 총 69개국(역내 49개국, 역외 20개국)으로 구성되며, 지분 비중은 역내국 63.389%(한국 5.026%), 역외국 36.611%, 투표권은 역내국 64.914%(한국 4.311%), 역외국 35.086%임.

조직은 총회 및 이사회(이사 12명, 대리이사 12명)와 총재(1명)·부총재(6명) 체제로 운영되고, 인력은 국제직원 및 국가·행정직원 등 총 3,944명 규모임.

(2)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술기후허브 협력사무소 설립 추진 경과

2023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ADB 제56차 연차총회('23.5.2.~5.5.)에서 기획재정부(現 재정경제부)와 ADB 간에 양해각서(MOU)²⁾를 체결하여

1) 회원국들이 주식 인수를 통해 약정한 총 자본 규모를 말함.

2) [참고자료 1] 아시아개발은행과 대한민국 정부 간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국내에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기후기술허브(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 K-Hub)’를 설립하고, 한국에 전용 사무 공간을 두기로 하였음.

이후 한국 내 협력사무소 개소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 및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실시하고 특권면제 등 설립협정문(안)을 마련하였음.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마련된 설립협정문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서명(‘25.8.22, 서울·마닐라)하여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이후 설립협정문 마련 과정에서 명칭이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기후기술허브(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 K-Hub)’에서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 Coordination Office; K-Hub 협력사무소)’로 변경되었음. 이후 2025년 12월 8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음.

<비준동의안 제출 논의 경과>

- 기재부-아시아개발은행 간 양해각서 체결(’ 23.5월)
 - 서울에 아시아개발은행-한국기후기술허브(K-Hub)를 설립하기로 합의
- 아시아개발은행 및 관계부처(기재·외교·법무·복지·고용)간 협의를 실시하여 설립협정문 마련(’ 23.8월~’ 25.4월)
- 차관회의(’ 25.7.24) 및 국무회의(’ 25.7.29)에서 설립협정문 의결, 대통령 재가(’ 25.7.29)
- 기재부 장관과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설립협정문에 서명(’ 25.8.22)
- 정부 내 절차를 거쳐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 25.12.8)

자료: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2026.1.15.)

한편 설립협정문이 의결('25.7.29.)되기 전인 2024년부터 ADB 내 한국의 단독 신탁기금인 'e-아시아 지식협력기금(e-Asia and Knowledge Partnership Fund)의 기술지원(TA) 사업 중 하나로 K-Hub 업무가 시작 되었음. 「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 (Project 57263-001) Technical Assistance Report (March 2024)」에 따르면 동 기술지원(TA) 사업기간은 3년(2024년 3월 12일~2027년 3월 31일)이며, 최초 3년간 운영 한 뒤 기능을 재검토할 예정임.

< K-Hub의 사업 기간 >

The memorandum provides that the K-Hub will commence operations in 2024 for an initial period of 3 years after which its functions will be reviewed.

자료: 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 (Project 57263-001) Technical Assistance Report (March 2024), ADB

2026년 2월 현재, K-Hub 인력은 총 4명으로, 정직원 소장 1명과 컨설턴트 3명이 근무중임.³⁾ 컨설턴트 3명은 연구원(Researcher) 2명과 기술전문가(Technology Specialist) 1명인데 이 중 연구원 2인이 한국 국적임. 사무실은 ADB 본부(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하고 있음.

관련 예산은 재정경제부에서 출연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사업 내의 내역사업인 'e-Asia 지식협력기금'에서 지출되고

3) 정직원 소장은 중국 국적이며, 컨설턴트 3명 중 Researcher 2명은 한국 국적, Technology Specialist 1명은 외국 국적임.

있음. K-Hub 예산으로 기술지원(TA) 사업기간인 3년 동안 500만 달러를 집행하기로 하였으며, 2026년 1월 29일까지 누적 지출은 약 115만 달러임.⁴⁾

< K-Hub 사업 추진 개요 >

구분	내용
프로젝트명	ADB-한국 기후기술 허브
프로젝트 유형	기술 지원
자금 출처	대한민국 e-Asia 지식협력기금
금액	미화 500만 달러
승인일	2024년 3월 12일
폐쇄일(Closing)	2027년 3월 31일
누적 지출액	114.8만달러 (2026.1.29. 기준)

자료: 아시아개발은행(ADB), 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Project No. 57263-001), Project Data Sheet, Cumulative Disbursements (as of 29 Jan 2026), <https://www.adb.org/projects/57263-001/main>

K-Hub는 현재까지 기후분야 기술·정책·사업모델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ADB가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기후기술 자문을 제공하며⁵⁾, 기후기술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⁶⁾하고 있음.

(3) K-Hub 협력사무소의 기능

‘기후기술(Climate Technology)’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기술’을 의미함⁷⁾.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가뭄에 강한 작물 재

4) 아시아개발은행(ADB), 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Project No. 57263-001), Project Data Sheet, Cumulative Disbursements (as of 29 Jan 2026), <https://www.adb.org/projects/57263-001/main>

5)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등에 대한 자문 제공

6) K-Hub 파트너십 컨퍼런스('25.11.5), K-Hub - KDI 기후기술 비즈니스 세미나('25.5.22) 개최 등

7)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배,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해안 방벽 설치와 같은 방식으로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임.⁸⁾

우리나라는 특허·연구개발 역량 등 혁신 기반 측면에서 국제적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⁹⁾. 또한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핵심 제조역량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¹⁰⁾. 다만,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¹¹⁾.

정부에 따르면 K-Hub 협력사무소를 한국에 개소하여 기후기술 관련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수행할 계획임.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기회와 국제금융기구 진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ADB 업무가 확대될 경우 K-Hub 협력사무소가 우리 기업의 국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8) UNFCCC, (<https://unfccc.int/topics/climate-technology/what-is-technology-development-and-transfer>)

9)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2025, Korea ranking and performance indicators, <https://www.wipo.int>

10)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Global EV Outlook 2025, electric vehicle battery supply chain and manufacturing capacity analysis

11)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24 (또는 최신 연차 통계), Korea electricity generation by source

(4) K-Hub 협력사무소의 지위

ADB 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하며, 개도국인 가맹국에 ① 32개의 국가사무소(Country Office), 선진국에 3개의 ②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그 밖에 ③ 3개 리에종 사무소(Liason Office)를 운영하고 있음.

② 지역사무소는 본부와 해당 지역을 위주로 선진 회원국의 정부·의회·언론·학계·민간(금융시장 포함)을 연결해 이해·지지 확대, 파트너십/재원 동원 및 대외홍보 등을 담당함.

< 지역사무소 현황 >

① 유럽대표사무소(ER0; European Representative Office)

- (소재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 (사무소장) Michiko Suga (일본 국적)
- (역할) ①ADB 및 아태지역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②ADB 사업수행을 위한 공공·민간부문 자원과 지원 동원, ③개발관련 지식·경험 공유 및 관련 기관 협력 강화

② 일본대표사무소(JR0; Japanese Representative Office)

- (소재지) 일본 도쿄
- (사무소장) Sayaka Takahashi (일본 국적)
- (역할) ①ADB 및 아태지역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②ADB 사업수행 위한 일본의 공공·민간부문 자원과 지원 동원, ③정보 제공 및 협조·조정 통해 일본 정부기관, NGO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ADB간 연락창구

③ 북미대표사무소(NAR0; North American Representative Office)

- (소재지) 미국 워싱턴
- (사무소장) Samuel Tumiwa (인도네시아 국적)
- (역할) ①미국·캐나다에서 ADB 및 아태지역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②ADB 사업수행 위한 북미 공공·민간부문 자원과 지원 동원, ③개발관련 지식·경험 공유 및 북미지역 소재 다자기구들과 협력 강화

자료: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2026.1.15.)

③ 리에종 사무소는 태평양 등 특정 지역 또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등 특정 사업 부문의 확대를 위한 사업을 현장 가까이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함.¹²⁾

< 리에종사무소 현황 >

- | |
|--|
| <p>① 태평양 연락·조정사무소(PLCO; Pacific Liaison and Coordination Offi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호주 시드니 - (사무소장) Jyotsana Varma (인도 국적) - (역할) ①나우루,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대상 지원사업 기획, 심사, 집행 관리를 총괄하는 거점, ②각종 행사 개최 통해 소통 촉진, 지식공유와 혁신 도모,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그 외 파트너들과 협력과 연계 추진, ③호주·뉴질랜드와의 공여국-수원국 관계 협력 ④태평양 지역 관련 다자기금(3개) 관리·이행 <p>② 태평양 소지역 사무소(SPSO; Pacific Subregional Offi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피지 수바 - (사무소장) Aaron Batten (호주 국적) - (역할) 쿡제도, 피지, 키리바시, 니우에, 사모아, 통가, 투발루 대상 ADB 지원사업의 기획, 심사, 집행관리 총괄하는 거점 <p>③ 싱가포르사무소(SGO; Singapore Offi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싱가포르 - (사무소장) Jackie Surtani (영국 국적) - (역할) 싱가포르 정부 및 금융기관 등과 ADB 간 협력, 자원 동원 등 지원 |
|--|

자료: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2026.1.15.)

K-Hub 협력사무소는 기존의 지역사무소나 리에종사무소와는 그 성격과 지위가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음. 현재 개소되어 있는 지역사무소와 리에종사무의 성격이 상설적인 정식 현지 조직임에 반하여, K-Hub 협력

12) [참고자료 3] ADB의 지역사무소 및 리에종 사무소 현황

사무소는 ADB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TA) 사업의 산출물에 불과함.

K-Hub 협력사무소와 정식 사무소의 차이는 근거 문서를 통해서도 나타남. 리에종사무소인 싱가포르사무소와 비교하면, 싱가포르 사무소의 경우, 「Establishment of an ADB Office in Singapore」 문서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해당 문서는 ADB 설립협정(Charter) 제37조 제2항을 직접 인용하여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branch office를 승인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즉, 싱가포르 사무소는 ADB 설립협정에 근거한 정식 지점사무소(branch office)로서 ADB의 조직체계 내에 편입된 상설 기구임.

반면, K-Hub 협력사무소는 「Technical Assistance Report」에 근거한 기술지원(TA)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문서에서 ADB 설립협정 제37조 제2항을 직접 인용하여 정식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취지의 명시는 없음.

또한, 싱가포르사무소가 폐쇄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영구한 상설 기구임에 반하여, K-Hub 협력사무소는 3년 동안의 한시 조직으로 마무리되는 기간에 ‘성과 평가’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축소 또는 해체가 가능함.

예산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해당 문서는 싱가포르가 내부 행정 예산(internal administrative expenses)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 ADB 본부 회

계에서 집행되는 구조인 반면, K-Hub 협력사무소는 한국이 설립한 신탁기금(e-Asia 지식협력기금)에서 집행되는 구조임.

이사회 승인 절차 측면에서도 싱가포르 사무소의 경우 이사회에 ‘사무소 설립(Establishment)’ 자체를 직접 권고(Recommendation)하여 기구 신설을 목적으로 승인받은 반면, K-Hub 협력사무소는 ‘기술지원 사업(Technical Assistance)’의 시행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사무소 설치가 사업수행의 부수적 수단으로 포함되어 있음.

< 정식 사무소(싱가포르사무소)와 K-Hub 협력사무소 비교 >

	싱가포르 사무소	K-Hub 협력사무소
조직 위상	<u>ADB Branch Office</u>	<u>기술지원(TA) 사업 일환의 협력사무소</u>
근거 문서	Establishment of an ADB Office in Singapore	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 Technical Assistance Report
ADB 설립협정 근거	ADB Charter 제37조제2항 ¹³⁾ 명시	-
이사회 승인 대상	사무소 설치(Office Establishment)	사업비 집행(TA Project)
운영 기간	상설	한시적(3년) 운영 후 평가
운영 자원	ADB 본부 행정 예산 (internal administrative expenses budget)	e-Asia 지식협력기금 (한국 신탁기금)

자료: Establishment of an ADB Office in Singapore, 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 Technical Assistance Report를 바탕으로 작성

13) Article 37

OFFICE OF THE BANK

2. The Bank may establish agencies or branch offices elsewhere.

따라서 K-Hub 협력사무소는 ADB 설립협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정식 사무소(branch office)라기보다는, 신탁기금 기반의 한시적 기
술험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시적 협력사무소로 보여짐.

2. 소요 비용 검토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K-Hub 협력사무소 설립 첫해는 사무실 설치비가 소요되어 45억 7,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설립 이듬해부터는 매년 32억 5,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K-Hub 협력사무소 설립 비용추계 >

(단위: 백만원, 환율: 1,380원/달러)

구 분 연 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지출	○ 컨설턴트 인건비	2,361	2,361	2,361	2,361	2,361	11,805	2,361
	○ 사무실 설치·운영비	1,071	255	255	255	255	2,091	418
	○ 행사	364	364	364	364	364	1,820	364
	○ 연구, 조사	28	28	28	28	28	140	28
	○ 기타 행정비용	14	4	4	4	4	30	6
	○ ADB 수수료	345	115	115	115	115	805	161
	○ 예비비	389	124	124	124	124	885	177
	소 계(A)	4,572	3,251	3,251	3,251	3,251	17,576	3,515
수입	-							
	소 계(B)							
총 비용(A-B)		4,572	3,251	3,251	3,251	3,251	17,576	3,515

상세 추계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컨설턴트 7인(2026년 3월 현재는 3명)을 고용하는 비용이며, 사무실 설치·운영비에는 임대료 8.5만불과 최초 공사비 60만불 등이 포함되어 있음. 행사비는 행사를 위한 장소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ADB 수수료는 ADB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5%를 산정한 것임.

< 상세 추계내역 >

- 컨설턴트 : 약 7명을 연간 고용하는 가정 하 계산(기존 3인 + 대외협력, 벤처캐피탈 분야 등 전문가 4인 추가 고용 예상)
- 사무실 : 임대료 8.5만불('26년은 7.6만불), 최초 공사비(집기 등) 60만불, 사무실 운영비 10만불
 - * '26년 비용 계산시에만 최초 공사비(집기 등) 포함
- 행사 : 장소대관 4.6만불, 연사초청비 4.5만불, 참가자 경비 17만불, 리셉션 0.3만불
- ADB service charge : 신탁기금 TA 사업할 때, 자금지출, 행정관리 등을 위해 ADB에 내는 수수료(약 5%)

다만 2027년 이후의 비용은 2026년 K-Hub 협력사무소 운영 규모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추계하였고, 사무실 임차료도 고정으로 가정하였으며, 환율도 1,380원/달러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어 실제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동 예산은 재정경제부에서 출연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사업 내의 내역사업인 ‘e-Asia 지식협력기금’에서 지출할 예정임. ‘e-Asia 지식협력기금’은 2006년에 정부가 ADB에 출연해서 만든 개발협력 신탁기금으로,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의 디지털·정책·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정부는 향후 투입될 비용이 ‘e-Asia 지식협력기금’의 잔고¹⁴⁾를 통해 지원될 것으로 추가적인 재원조달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다만, K-Hub 협력사무소 관련 재정 투입 확대에 따라 다른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 등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4) 기금 연례보고서(2024)에 따르면, 2억 300만 달러가 총 공여되었음. 이 중 집행이 승인된 규모는 1억 8,220만 달러로, 약 3,120만 달러(450억원 수준)이 아직 미승인 된 것으로 보임.

한편, e-Asia 지식협력기금은 기술지원(TA) 및 투자 등을 통하여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제도·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탁기금인바, 사무소 운영 경비까지 동 기금에서 전액 충당하는 방식은 기금 설치 목적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

(1) 국회 비준동의 사유¹⁵⁾

동 협정은 ADB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K-Hub 협력사무소의 임직원의 고용 또는 임용에 대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 기여를 면제하며(제13조제3항), K-Hub 협력사무소의 장과 그 부양가족이 대한민국 내의 다른 국제기구의 대표 사무소 또는 유사 사무소의 대표에게 정부에 의해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감면 및 편의를 누리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3조제4항).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법원의 민·형사 재판관할권, 과세 등 국가행정권 및 입법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동 협정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함.

또한 동 협정은 ADB 임직원의 고용 및 계약에 관한 모든 문제는 ADB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만 규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제4항), 이는 대한민국 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11조¹⁶⁾에 대한 특례라고 할 수 있음. 이처럼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을 제약 하는 효과가 있는바, 동 협정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함.

따라서 동 협정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자 입법사항에 관한 조

15) [참고자료 2] 국회 동의 여부 등 심사결과(법제처 심사결과 자료)

16)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약으로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17)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할 것임.

(2) 국회 비준동의 사유에 대한 검토

1) 국내의 국제기구 사무소 관련 협정 사례

현재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기구 조직의 성격을 분류하면, 크게 ① 국제기구 본부, ② 국제기구 정식 지역 사무소, ③ 그 외 국제기구의 정책 센터로 나눌 수 있음.

① 국제기구 본부(Headquarters)는 대한민국을 주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본부가 설치·운영되는 독립적인 국제기구의 최상위 조직으로, 인천 송도에 위치한 녹색기후기금(GCF), 서울에 위치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이 이에 해당함.

② 국제기구 지역 사무소는 본부는 해외에 있으나, 지역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설 지역 거점 조직임. 해당 권역 내의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본부의 주요 사업을 이행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함.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사무소 등이 이에 해당함.

17)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국제기구의 정책 센터는 특정 주제에 특화된 조직으로, 지역 사무소처럼 행정적 권한이나 광범위한 사업 집행권을 갖기 보다는 본부의 지식·정책 기능 또는 파트너십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 중 독자적인 국제기구를 설치하는 GCF와 GGGI는 관련 설립 협정에 대하여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으며, 국제기구의 사무소 또는 센터 중에서는 WBG 한국사무소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음.

< 한국 소재 국제기구 및 설립 시 국회 비준동의 여부 >

조직	협정 명	국회 비준동의 여부
GCF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	○ (2013. 6. 25.)
GGGI	대한민국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간의 본부 협정	○ (2013. 6. 25.)
WBG 한국사무소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 (2013. 12. 19.)
UNESCAP 동북아사무소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시아지역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X (비준동의 미해당)
UNDP 서울정책센터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 MOU 형식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외교부 조약정보시스템

UNESCAP 동북아사무소, UNDP 서울정책센터 및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관한 협정(또는 MOU)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해당 협정이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이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새롭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국제기구의 사무소 또는 하위 조직(센터 등)의 경우, 우리나라가 비준한 해당 국제기구 본부의 설립협정에서 이미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입법사항이나 주권의 제약 또는 국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을 사무소 등의 설립협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자 할 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함.

그러나 위 협정들은 K-Hub 협력사무소 협정에서 비준 사유로 제시된 고용 관련 내부규정의 배타적 적용, 사회보장제도 기여 의무 면제, 기구의 장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한 타 국제기구 대표 수준의 특권·면제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거나, 해당 국제기구의 설립협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명시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임.

＜ 국내 소재 국제기구 사무소의 특권 및 면제 등 ＞

구분	동 협정	비준동의 O			비준동의 X		
	K-Hub 협력사 무소	GCF	GGGI	WBG 한국 사무소	UNESC AP 동북아 사무소	UNDP 서울 정책 센터	OECD 대한민 국정책 센터
① 고용 관련 내부규정의 배타적 규율	O	X	X	O	X	X	X
	협정 제6조 제4항	해당 조항 없음	해당 조항 없음	제3조 제3절 라.	해당 조항 없음	해당 조항 없음	해당 조항 없음
② 사회보장제도 기여 의무 면제	O	O	X	O	X	X	X
	협정 제13조 제3항	제15조	해당 조항 없음	제5조 나.	해당 조항 없음	해당 조항 없음	해당 조항 없음
③ 기구의 장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한 타 국제기구 대표 수준의 특권·면제	O	△	X	O	△	△	X
	협정 제13조 제4항	제13조 1항 및 2항	해당 조항 없음	제4조	조항은 있으나 母 조약 범위 內	조항은 있으나 母 조약 범위 內	해당 조항 없음

자료: 외교부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2) 소결

한국에 소재한 국제기구에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의 범위는 해당 국제기구와 우리나라 간의 협정 내용, 사무소의 법적·제도적 지위 및 수행 기능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지고 있음.

독립된 국제기구 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협정 자체가 국제법상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하고 주권의 일부 제약을 수반하는 성격을 가지는

바,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사례가 다수 존재함.

반면, 국제기구의 지역사무소 또는 정책센터 설치와 관련한 협정은 국내법 체계 내에서 특권·면제의 범위를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새로운 입법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행정부 간 협정 또는 행정협정 형태로 체결되고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있었음.

특히 국제기구의 지역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책센터·협력센터·플랫폼 등과 같은 프로그램형 조직은 통상 국내법 질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입법사항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특권·면제의 범위 또한 제한적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사무소 지위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여부 >

	국회 비준동의 여부	비고
국제기구 본부	비준 동의 ○	독립된 국제법상 기구 설치로 광범위한 특권·면제 부여
국제기구 정식 사무소	일부 비준 동의	기능·면제 범위에 따라 상이
정책센터·협력센터 등 기타 조직	통상 비준동의 없음	국내법 범위 내 협정 또는 母협정 범위 내 규정

이에 비추어 볼 때, K-Hub 협력사무소가 특정 기술지원(TA)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협력 거점에 가까운 조직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협정에서 고용에 관한 내부규정의 배타적 적용, 사회보장제도 기여 의무 면

제, 기구의 장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한 특권·면제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기존 유사 사례에 비하여 상당한 범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주요 내용 검토

(1) K-Hub 협력사무소의 소재 및 설립(제2조)

협정 제2조는 ADB가 K-Hub 협력사무소를 ‘서울’에 개소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2조

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의 설립

아시아개발은행은 대한민국 서울 내에 공관을 포함한 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를 개소함으로써 대한민국 내에 존재를 확립할 수 있다.

2023년 5월 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한 MOU 체결 시, MOU 상에 K-Hub가 서울 내 전용 사무공간에 위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정부에 따르면 MOU 체결 전 협의 과정에서, 서울에 주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점, ADB 관계자 방한 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사무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점, 우수 인재 구인 및 네트워크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을 위해 ADB측에서 K-Hub를 서울에 두기 희망하였다고 함.

참고로, 한국에 국제기구 사무소를 유치하는 기존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GGGI 설립협정”)」 및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이하 “GCF 본부협정”)」에서는 사무소의 소재지 각각 서울과 인천으로 협정에 명

확히 규정하였음.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이하 WBG사무소 설립협정”)」,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이하 “UNDP 서울정책센터 설립협정”) 등에서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대한민국 내 지역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음.

동 협정과 같이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할 경우 최초 설치 단계에서부터 부산, 인천 등 다른 지역 선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협정 문구에 일정한 장소 선택의 재량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K-Hub 협력사무소의 목적·기능(제3조)

협정 제3조는 K-Hub 협력사무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3조

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의 목적 및 기능

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는 아시아개발은행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촉진하며, 이는 아시아개발은행의 개발도상회원국에 도움이 되도록 기후 기술 및 관련 지식에 대한 접근과 그 교환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기후 기술 허브의 개발과, 양 당사자가 수시로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협정에 따르면 K-Hub 협력사무소는 ADB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ADB의 개발도상회원국에 도움이 되도록 기후기술 및 관련 지식에 대한 접근과 그 교환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기후기술 허브의 개발 역할을 담당하게 됨.

또한, 협정은 대한민국과 ADB가 수시로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관련 활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후 우리나라와 ADB 간의 합의에 따라 K-Hub 협력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3) ADB의 특권 및 면제(제5조)

협정 제5조는 ADB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ADB와 ADB의 재산 및 자산은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 및 압수·압류 등의 절차로부터 면제되며, ADB의 기록물과 공식 문서는 불가침성이 보장됨.

이러한 특권 및 면제는 국제기구가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로, 타 협정에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구분	동 협정 비준동의안	WBG사무소 설립협정 (국회 비준동의 o)	UNDP 서울정책센터 설립협정 (국회 비준동의 x)
압수·압류 등으로부터의 면제	아시아개발은행의 재산과 자산에 대해, 그 소재지와 보유자에 관계없이,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한 최종 판결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모든 형태의 압수·압류·집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수색·징발·몰수·수용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통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	세계은행그룹의 재산과 자산에 대해, 그 소재지와 관계없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행위를 통한 수색·징발·몰수·수용 등 모든 형태의 압류로부터의 면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최종 판결 이전에는 잠정적·사건적 제한을 포함한 모든 압류·차압·가압류로부터 면제	정책센터와 그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 정책센터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집행적·행정적·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징발·몰수·수용 및 다른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
문서의 불가침성	아시아개발은행이 소유하거나 보유하며 공식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기록물과 문서에 대해, 그 소재지와 관계없이 불가침성의 보장	세계은행그룹의 모든 문서에 대해,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상관없이 불가침성의 보장	정책센터의 문서는 불가침

(4) K-Hub 협력사무소 협력사무소 및 공관(제6조)

1) 정부의 K-Hub 협력사무소 사무 공관 및 시설에 관한 지원

협정 제6조제2항은 정부가 ADB의 요청이 있는 경우 ADB가 K-Hub 협력사무소 공관¹⁸⁾에 필요한 사무 공간과 K-Hub 협력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facilities)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협정 제6조제2항). 동 규정에 따라 정부는 향후 ADB의 요청이 있을 시 K-Hub 협력사무소 설치 및 시설 구비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됨.

18) '공관'이란 K-Hub 협력사무소의 사무실, 사무실 건물 및 해당 구역을 말한다(협정 제1조 사목)

사무소 설치 및 시설에 관한 지원 여부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협정마다 상이함. 동 협정처럼 정부가 사무소 설치 및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WBG사무소 설립협정」과 같이 사전 협의에 따라 국제기구 사무소를 유치하는 지자체에서 사무소 임차 비용을 지원할 경우 사무소 설치 지원은 제외하는 경우도 있었음.

정부에 따르면 K-Hub 협력사무소 사무소가 소재할 예정인 서울시에서 임차료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현재와 같이 문구가 성안된 것으로 보임.

다만 향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소 임차료 또는 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정 문구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구분	동 협정 비준동의안	WBG사무소 설립협정 (국회 비준동의 o)	UNDP 서울정책센터 설립협정 (국회 비준동의 x)
사무소 설치 및 시설 구비	(제6조제2항) 정부는 요청이 있는 경우 협력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 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 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은행그룹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계은행그룹이 대한민국 내에서 지역 사무소에 적합한 사무공간을 찾도록 지원할 것이다	정부는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정책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비고	사무실 최초 공사비, 임차료 등 금전적 지원이 포함됨	WBG 한국사무소의 임차료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였음.	

2) 고용 등에 관한 국내 법에 대한 특례

협정 제6조제4항은 K-Hub 협력사무소의 고용 또는 계약에 관한 사항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ADB의 내부 규정만을 적용받는다고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협정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대한 특례라고 할 것임.¹⁹⁾

협정안	관련 법률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안 제6조 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및 공관 1. ~ 3. (생략) 4. 고용 또는 계약에 관한 규정,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한 아시아개발은행의 내부 규정만이 대한민국 내 아시아개발은행 임직원의 고용 또는 계약 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규율한다. 5. • 6. (생략)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법제처 심사결과 자료

이러한 규정은 국제기구의 기능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국내의 사업장과는 그 성격이 상이한 국제기구가 고유의 정책에 따라 내부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근로자 보호에 있어 국내 법규가 ADB의 내부 규정에 비하여 합리적인 경우에도 국내 법규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WBG 사무소 설립협정은 동 협정과 유사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UNDP 서울정책센터 설립협정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국제기구 내부 규정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내 법규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

구분	동 협정 비준동의안	WBG사무소 설립협정 (국회 비준동의 o)	UNDP 서울정책센터 설립협정 (국회 비준동의 x)
고용 관계에 관한 특례	고용 또는 계약에 관한 규정,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한 아시아개발은행의 내부 규정만이 대한민국 내 아시아개발은행 임직원의 고용 또는 계약 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규율한다.	고용규칙,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세계은행그룹의 내부규정만이 대한민국에 있는 세계은행그룹 직원의 고용 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규율한다.	해당 사항 없음

(5) 임직원 및 관련한 자들의 거주 자유(제12조)

협정 제12조는 정부가 K-Hub 협력사무소 임직원 및 관련한 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입국, 거주, 출국 및 대한민국 내 이동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조치의 대상은 ① K-Hub 협력사무소의 임직원, ② 임직원의 부양가족, ③ ADB의 공식 업무로 ADB가 초청한 사람이며, 초청자의 경우 ADB가 해당 인원의 명단을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음. 기존의 국내 소재 국제기구 본부 협정에도 이와 유사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협정은 ‘거주(reside in)’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협정들과 그 문안이 상이함.

다른 협정들을 살펴보면, 우선 「WBG 사무소설립협정」은 ‘WBG의 직원과 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을 면제하고 있음. 즉, 임직원과 부양가족 외의 공식 초청자에 대해서는 입국이나 거주 자유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UN CTCN 협력연락사무소 설립협정」²⁰⁾과 「한-FAO 협력연락사무소 설립협정」²¹⁾ 등 타 협정은 자유를 촉진하는 대상의 범위를 동 협정과 같이 ‘그 밖에 국제기구가 공무로 초청한 사람’을 포함

20)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21) 한-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협력연락사무소 설립 협정

하면서도, ‘거주(reside in)’이 아닌 ‘체제(sojourn in)’의 자유만을 규정하고 있음.

구분	동 협정 비준동의안	WBG사무소 설립협정 (국회 비준동의 o)	한-UN CTCN 협력연락사무소 설립협정, 한-FAO 협력연락사무소 설립협정 등
대상	사무소 임직원, 임직원의 부양가족, <u>국제기구 업무로 국제기 구가 공식 초청한 자</u>	직원, 배우자 및 부양가 족	직원, 배우자 및 부양가 족,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u>국제기구가 공무로 초청 한 사람</u>
조치의 범위	입국, <u>거주(reside in),</u> 출국, 이동의 자유에 필 요한 조치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 면제	입국, <u>체류(sojourn in),</u> 출국을 용이(또는 원활) 하게 하는 조치

또한 현행 국내법 체계에서 ‘국제기구 업무로 국제기구가 공식 초청한 자’는 거주(居住)의 자유가 인정되는 대상이 아님. 법무부에 따르면 협정상 ‘거주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와 이에 수반되는 각종 신고 의무의 면제 조치를 의미하는데, 해당 규정은 ‘국제기구 업무로 국제기구가 공식 초청한 자’를 외국인 등록 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제기구는 그 활동 특성상 단기 전문가, 자문위원, 프로젝트 수행자, 국제회의 참석자 등 공식 초청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을 특례 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행정절차의 부담으로 인해 사업 수행의 신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거주’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한 공식 초청자에게까지 장기적 거주에 준하는 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협정상 ‘거주’의 의미와 공식 초청자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행 국내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6) 임직원 등의 특권 및 면제(제13조)

협정 제13조는 K-Hub 협력사무소 임직원 및 ADB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각종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특히 같은 조 제8항에서는 특권과 면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ADB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의 과도한 남용이 국내법 체계에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항으로 판단됨.

또한, 제13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특권·면제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인 임직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K-Hub 협력사무소 임직원에 대한 특권·면제와 그 직원에 대한 각종 편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긴 하나 WBG 사무소 설립협정이나 GCF 본부협정과는 유사한 수준임.

구분	동 협정 비준동의안	WBG사무소 설립협정	GCF 본부협정
공식 행위에 대한 사법 면제	ADB가 서면으로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임직원·이사·총재·부총재·직원·전문가가 공식 자격으로 행한 발언·서면·행위 전반에 대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	직원이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서면 발언 및 모든 행위에 대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	직원·전문가·기금의 공적 기능 수행자가 공식 자격으로 수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사법적 절차로부터 면제
급여·수당에 대한 과세	ADB가 지급하는 급여 및 사례금에 대해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	세계은행그룹이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해 「전문기구 특권·면제협약」에 따른 과세 면제	기금이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
외환·환전 편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임직원에게 외교공관의 동등 직급 공무원에 준하는 외환·환전 편의 제공	외교공관의 상응하는 직급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외환 편의 제공	상응하는 직급의 외교공관 직원과 동일한 외환 편의 제공
최초 부임 시 개인 물품의 무관세 반입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임직원이 대한민국에서 최초 직위에 부임할 때, 사적 사용·소비를 위한 가구 및 물품의 무관세 반입 허용	최초 부임 시 가구 및 소지품의 무관세 반입 허용	최초 부임 시 가구 및 일용품의 무관세 반입 허용
국제적 위기 시 송환 편의	공식 업무로 체류 중인 경우, 임직원과 부양가족에게 외교사절과 동일한 수준의 송환 편의 제공	직원과 배우자·부양가족에게 외교단 구성원과 동일한 본국 귀환 편의 제공	직원과 부양가족에게 외교공관 직원과 동일한 귀환 편의 제공

구분	동 협정 비준동의안	WBG사무소 설립협정	GCF 본부협정
사회보장제도 적용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임직원 및 전문가에 대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 전반 적용 제외, 단 <u>대한민국 국적자의 국민건강보험은 보충협정으로 처리 가능</u>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 제외, <u>국민건강보험은 보충협정으로 처리</u>	직원·전문가·계약인력 전반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 적용 제외, 대한민국 국적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유지
사무소 대표(장)에 대한 지위	협력사무소 장과 부양가족에게 다른 국제기구 대표 사무소장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면제·편의 부여	사무소 대표와 그 배우자·부양가족에게 다른 국제기구 대표와 동등한 특권·면제·편의 부여	(별도의 사무총장 특별규정은 없으나, 본부 구조상 고위직은 광범위한 특권 범주에 포함)
명단 통보 및 신분증 발급	임직원·전문가 명단을 정부에 통보하고, 요청 시 특권·면제를 증명하는 신분증 발급	요청 시 직원에게 특권·면제를 증명하는 신분증 발급	직원·전문가·가사고용인 및 부양가족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명단을 정기적으로 정부에 통보
특권·면제의 목적 및 포기	특권·면제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ADB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사법절차 방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포기 가능	특권·면제는 기구의 목적을 위해 부여되며, 남용 방지를 위해 규칙 제정 및 정부와의 협조 의무 명시	특권·면제는 기금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u>사법절차를 방해할 경우 기금이 직권으로 면제 포기 의무를 부담</u>
남용 방지 및 국내법 존중	특권·면제 남용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 의무, 특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민국 법률 존중 및 내정 불간섭 의무	특권·면제 남용 방지를 위한 규칙 제정, 교통 사고 조사 등 사법집행 협조 및 국내법 준수 의무 명시	특권·면제 남용 방지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경찰규칙 준수 및 사법행정 원활화를 위해 상시 협조

다만, 국회 비준동의 사유가 되는 제13조제3항과 제13조제4항의 경우 국제기구별로 차이가 있음.

사회보장제도 및 그 밖의 의무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의 기여를 면제하는 규정(제13조제3항)은 GCF 본부협정과 WBG 한국사무소 설립협정에는 있으나, GGGI 협정, UNESCAP 동북아사무소 설립협정, UNDP 서울정책센터 설립협정,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설립 양해각서 등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13조제3항 관련 유사 협정 현황 >

구분	동 협정	비준동의 O			비준동의 X		
	K-Hub 협력사 무소	GCF	GGGI	WBG 한국 사무소	UNESC AP 동북아 사무소	UNDP 서울 정책 센터	OECD 대한민 국정책 센터
사회보장제도 기여 의무 면제 (제13조제3항)	O 협정 제13조 제3항	O 제15조	X 해당 조항 없음	O 제5조 나.	X 해당 조항 없음	X 해당 조항 없음	X 해당 조항 없음

자료: 외교부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 제외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독립성과 이중부담 방지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국제기구가 자체적인 연금·보험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성격의 국내 제도를 중복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K-Hub 협력사무소는 특정 기술지원(TA) 사업의 산출물로 설치·운영되는 협력 거점에 가까운 조직이라는 점에서, 본부급 또는 정식 지역사무소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전면 적용 제외를 인정하는 것이 그 지위에 상응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단기 파견 전문가, 계약 인력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전면 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질 여지도 있음.

또한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자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는 핵심

제도인바, 그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편의의 차원을 넘어 국내 입법정책에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동 규정은 그 필요성과 비례성 측면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보임.

다음으로, 기구의 장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하여 다른 국제기구 대표사무소 또는 유사 사무소의 대표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감면 규정(제13조제4항)은 GGGI 협정과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설립양해각서에는 규정이 없음.

UNESCAP 동북아사무소와 UNDP 서울정책센터의 경우 해당 조항은 있으나 UNESCAP 동북아사무소와 UNDP 서울정책센터도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해당 규정이 있어, 새로운 내용을 규율하게 되는 것은 아님.

< 제13조제4항 관련 유사 협정 현황 >

구분	동 협정	비준동의 O			비준동의 X		
	K-Hub 협력사무소	GCF	GGGI	WBG 한국 사무소	UNESC AP 동북아 사무소	UNDP 서울 정책 센터	OECD 대한민 국정책 센터
기구의 장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한 타 국제기구 대표 수준의 특권·면제 (제13조제4항)	O	△	X	O	△	△	X
	협정 제13조 제4항	제13조 1항 및 2항	해당 조항 없음	제4조	조항은 있으나 母 조약 범위 內	조항은 있으나 母 조약 범위 內	해당 조항 없음

자료: 외교부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일반적으로 외교적 수준의 특권은 독립된 국제기구 본부장이나 상설 지역사무소 대표 등 국제기구를 대표하여 대외적 협상 및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고위직에 대하여 인정되어 왔음. 그러나 다른 국제기구와 K-Hub 협력사무소 사무소의 역할, 기능 및 지위를 고려할 때 그 장에게 외교공관장급에 준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능 수행에 불가결한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아울러 “다른 국제기구 대표 사무소장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표현은 비교 대상에 따라 특권 범위가 자동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구체적 범위가 협정문상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는 향후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특권의 범위가 확대될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7) 부양가족의 취업 지원(제14조)

협정 제14조는 K-Hub 협력사무소 임직원의 부양가족²²⁾이 해당 임직원이 K-Hub 협력사무소 사무소에 배치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정하는 규칙과 규정에 따라 유급 고용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임직원의 부양가족은 취업이 불가능한 A-2(공무) 비자 자격을

22) 라. “부양가족”이란 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임직원의 가구 구성원으로서, 주로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임직원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한민국이 외교 공관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모든 범주의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지니기 때문으로, A-2 자격을 가진 자가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²³⁾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외 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동 협정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구분	동 협정 비준동의안	WBG사무소 설립협정	GCF 본부협정
부양가족의 취업 가능성	임직원이 협력사무소에 배치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의 유급 고용 종사 허용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신청을 현행 규칙과 규정에 따라 우호적으로 고려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이거나 직원이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자녀에 대해 취업 허용
취업 승인 절차	ADB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유급 고용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대한민국 법무부에 전달	(명시 없음)	신속하고 간단한 검증절차를 거쳐 취업을 허용
취업 활동과 특권·면제 의 관계	유급 고용이 허가된 부양가족은 취업 활동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행정상 면제를 누리지 않으며, 대한민국 법률 및 법원의 관할에 따름	(명시 없음)	(명시 없음)

23)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종합의견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K-Hub 협력사무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공관 및 그 소속직원에게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K-Hub 협력사무소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동 협정을 통한 K-Hub 협력사무소 설치에 정부는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ADB의 기후기술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우수한 인재 활용과 기술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ADB 내 우리나라의 영향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K-Hub 협력사무소가 기금 예산에 기반한 기술지원(TA)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는 협력 거점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동 협정에서 고용에 관한 내부규정의 배타적 적용, 사회보장제도 기여 의무 면제, 기구의 장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한 특권·면제 보장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K-Hub 협력사무소의 법적 성격과 수행 기능에 비추어 적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K-Hub 협력사무소 설치를 위하여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

이 소요되고 정부 인력의 상시 파견 의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점까지 고려할 때,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면제의 범위가 해당 기관의 지위와 기능에 상응하는 수준인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e-Asia 지식협력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2024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의 사업 기간 동안, K-Hub가 실제 우리 기업의 기후기술 관련 국제사업 진출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이후 해당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물리적 거점의 상설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ADB 설립협정 제37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 승인 절차를 정식으로 이행함으로써 K-Hub 협력사무소에 ‘상설 사무소’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 이후 국제기구 정식 사무소에 걸맞은 특권 및 면제 부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정책적 타당성 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264

【참고자료 1】 ADB의 지역사무소 및 리에종 사무소 현황

※ ADB 사무소는 크게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와 리에종사무소(Liaison Office)로 구분

- 지역사무소: 정보전파, 채용 등 자원동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 등이 주요역할
- 리에종사무소: 태평양 지역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 또는 특정 사업부문 확대를 위해 지역시장에 동 부문인력 배치* 등의 목적으로 설립

* (예) 싱가포르 사무소,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등 민간부문 사업 중심

<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선진국 소재) >

① 유럽대표사무소(ERO; European Representative Office)

- (소재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 (사무소장) Michiko Suga (일본 국적)
- (역할) ①ADB 및 아태지역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②ADB 사업수행을 위한 공공·민간부문 채용과 지원 동원, ③개발관련 지식·경험 공유 및 관련기관 협력 강화

② 일본대표사무소(JRO; Japanese Representative Office)

- (소재지) 일본 도쿄
- (사무소장) Sayaka Takahashi (일본 국적)
- (역할) ①ADB 및 아태지역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②ADB 사업수행 위한 일본의 공공·민간부문 채용과 지원 동원, ③정보 제공 및 협조·조정 통해 일본 정부기관, NGO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ADB간 연락창구

③ 북미대표사무소(NARO; North American Representative Office)

- (소재지) 미국 워싱턴
- (사무소장) Samuel Tumiwa (인도네시아 국적)

- (역할) ①미국·캐나다에서 ADB 및 아태지역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②ADB 사업수행 위한 북미 공공·민간부문 자원과 지원 동원, ③개발관련 지식·경험 공유 및 북미지역 소재 다자기구들과 협력 강화

< 리에종사무소(Liaison Office) >

① 태평양 연락·조정사무소(PLCO; Pacific Liaison and Coordination Office)

- (소재지) 호주 시드니
- (사무소장) Jyotsana Varma (인도 국적)
- (역할) ①나우루,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대상 지원사업 기획, 심사, 집행관리를 총괄하는 거점, ②각종 행사 개최 통해 소통 촉진, 지식공유와 혁신 도모,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그 외 파트너들과 협력과 연계 추진, ③호주·뉴질랜드와의 공여국-수원국 관계 협력 ④태평양 지역 관련 다자기금(3개) 관리·이행

② 태평양 소지역 사무소(SPSO; Pacific Subregional Office)

- (소재지) 피지 수바
- (사무소장) Aaron Batten (호주 국적)
- (역할) 쿡제도, 피지, 키리바시, 니우에, 사모아, 통가, 투발루 대상 ADB 지원사업의 기획, 심사, 집행관리 총괄하는 거점

③ 싱가포르사무소(SGO; Singapore Office)

- (소재지) 싱가포르
- (사무소장) Jackie Surtani (영국 국적)
- (역할) 싱가포르 정부 및 금융기관 등과 ADB 간 협력, 자원 동원 등 지원

자료: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국회 동의 여부 등 심사결과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안]

1. 주요 내용

-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의 설립 근거와 대한민국이 그 사무소와 사무소 소속 임직원 등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 개발도상회원국의 기후 기술 및 관련 지식에 대한 접근과 그 교환을 촉진하려는 아시아개발은행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검토사항

-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바,
 - 이 협정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임.

1)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해당 여부

- 이 협정안 제6조제4항에서 고용 또는 계약에 관한 규정, 정책 및 절차

를 포함한 아시아개발은행의 내부 규정만이 대한민국 내 아시아개발은행 임직원의 고용 또는 계약 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규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협정안 제13조제3항에서 아시아개발은행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이하 “협력사무소”라 함)의 임직원은 자신의 아시아개발은행과의 고용 또는 임용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또는 그 밖의 의무보험 및 연금제도에 기여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협력사무소의 장의 부양가족은 대한민국 내의 다른 국제기구의 대표 사무소 또는 유사 사무소의 대표에게 정부에 의해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감면 및 편의를 누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조약 제212호, 1966. 4. 8. 국회 비준 동의, 1966. 8. 22. 국내 발효, 이하 “설립협정”이라 함) 제8장(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에서는 은행의 법적지위, 사법 절차로부터의 면제, 은행직원의 면제 및 특권, 은행 자산 등에 대한 모든 과세와 관세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설립협정에서는 이 협정안 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제4항에서와 같이 아시아개발은행의 내부 규정만이 대한민국 내 아시아개발은행 임직원의 고용 또는 계약 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규율하도록 하거나, 아시아개발은행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협력사무소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등의 기여를 면제하며, 협력사무소의 장의 부양가족에게 대한민국 내의 다른 국제기구의 대표 사무소 또는 유사 사무소의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감면 및 편의를 누리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협정안은 설립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권과 면제의 범위를 넘어선 특권과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국회 동의 대상인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권’이란 ‘영토주권’이나 ‘중요한 통치권(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우리나라가 아시아개발은행 및 협력사무소의 임직원과 협력사무소의 장의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설립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권과 면제의 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국내 법원의 민·형사재판관할권, 과세 등 국가행정권 및 입법권의 행사를 추가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협정안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해당 여부

- 이 협정안 제6조제4항에서 고용 또는 계약에 관한 규정,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한 아시아개발은행의 내부 규정만이 대한민국 내 아시아개발은행 임직원의 고용 또는 계약 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규율한다고 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아시아개발은행의 내부 규정만이 대한민국 내 아시아개발은행 임직원의 고용 또는 계약 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규율하도록 정한 이 협정안 제6조제4항은 대한민국 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11조에 대한 특례라고 할 것임.

협정안	관련 조약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근로기준법」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안 제6조 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및 공관 1. ~ 3. (생략) 4. <u>고용 또는 계약에 관한 규정,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한 아시아개발은행의 내부 규정만이 대한민국 내 아시아개발은행 임직원의 고용 또는 계약 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규율한다.</u> 5. • 6. (생략)	제11조(적용 범위) ① <u>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② <u>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u>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따라서, 이 협정안은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3. 검토의견

○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협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및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3】 K-Hub 협력사무소 설립 양해각서(MOU)(2023.5.3.)

아시아개발은행과 대한민국 정부 간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K-Hub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은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둔 1966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서, 극심한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번영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아시아 태평양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DB는 7개 우선순위 중 하나로, 기후 변화 대처, 기후 및 재난 회복력 구축, 환경 지속 가능성 강화 목적으로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에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금융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진다.

기획재정부가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는 기후 관련 기술 및 지식 활용을 통해 ADB 개도국을 지원하고, 아시아 태평양 발전 기여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고려하여, ADB와 정부는(양측 모두를 “당사자들”로, 개별적으로 ‘당사자’로 칭함) 기후기술허브가 기후 관련 기술 및 지식 교환 촉진하여 개도국에 도움을 줄 것을 합의하였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ADB-한국 기후기술허브(이하 “K-Hub 협력사무소”) 구축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본 양해 각서(이하 “MoU”) 서명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 ADB-한국 기후기술허브

2.1 본 MoU는 명시된 조건에 따라 K-Hub 협력사무소 설립 방안 모색을 위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 K-Hub 협력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a) 개도국 개발계획과 기후지식 아젠다에 최신 기후기술과 지식을 공유하여 ADB의 국가 기능을 향상하고, ADB의 기후 변화 투자 결정을 위한 선행 지식 작업
- b) 기후기술 관련 역량 개발 이니셔티브에 기여하여 ADB 기술 협력 프로젝트와의 연계 확대
- c) ADB 프로젝트 설계 및 시행을 통해 각 국가 상황에 부합하는 ADB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 이전 지원
- d) 금융 기관, 연구 기관, 민간 부문 네트워크를 비롯한 글로벌 기후기술 공급자와의 연결 지원
- e) 혁신적 기후기술 적용 및 시행을 이끌 산업 지도자, 기후기술 전문가 등 기타 ADB 이해 관계자 간 지식 및 전문성 교환 지원
- f) 당사자들 간 수시 합의된 기타 관련 활동

2.3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라 K-Hub 협력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 a) 명칭은 “ADB-한국 기후 기술 허브”로 한다.
- b) K-Hub 협력사무소는 한국, 서울 내 전용 사무 공간에 위치하며, 이는 K-Hub 협력사무소의 업무상 필요 및 정부와의 조정에 따라 협의된다.
- c) K-Hub 협력사무소는 다음의 인력에 의해 운영된다.: (i) 최소 1명의 ADB 직원 및 최소 2명의 정부 전임 직원 (ii)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른 추가 컨설턴트. 당사자들은 본 인력 구성 방식이 당사자들 간 추가 논의와 별도의 합의 대상임을 인지한다.
- d) 당사자들 간 비용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i) K-Hub 협력사무소 운영 및 설립에 따른 발생 비용은 당사자들 간 분담한다.
 - (ii) 비용 중 정부 부담분은 ‘한국 e-아시아 지식협력 신탁기금’(이하 “신탁기금”) 또는 타 채널을 통해 부담한다.
- e) ADB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 국장 및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으로 구성된 고위급 운영위원회가 감독한다.
- f) 2024년부터 3년간의 초기 운영 기간을 가지며, 이후 K-Hub 협력사무소 기능

은 본 MoU 3조에 따라 모니터링, 검토 및 협의 절차에 기초하여 당사국들 간 협의에 의해 검토된다.

2.4 당사자들 간 협의된 기타 모든 사안은 각각의 내부 목표, 기능, 정책 및 당사자별 절차를 따른다.

3. 모니터링, 검토 및 협의

당사자들은 본 MoU에 따른 계획, 시행 및 협력 활동 결과 검토를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을 인지한다. 당사자들은 본 MoU에 따라 진행중인 협력 활동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러한 협의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한다.

4. 연락처: 의사소통 및 안내 채널

4.1 당사자들은 효율적 협력을 위해 기관간 개방적, 포괄적, 정기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4.2 업무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당사자들 간 의사소통 채널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성명 : Jacob Sorensen, Director Partner Funds Division

주소 : 6 ADB Avenue Manila 1550, Philippines

팩스 : +63 2 8636 2444

전화번호 : +63 2 8632 6166

이메일 : Jsorensen@adb.org

한국: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팩스 : (+8244) 215-8033

전화번호 : (+8244) 215-8721

이메일 : lyusoyoon@korea.kr

4.3 당사자는 서면 통지를 통해 추가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본 MoU 4조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을 대체할 수 있다.

5. 일반 조항

5.1 법적 지위: 본 MoU는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5.2 재정적 의무: 본 MoU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들에게 계약, 지원 협의 및 기타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사자들 간 상환 또는 기부를 포함한 모든 활동은 각 당사자들 정책, 절차,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5.3 특권 및 면책: 본 MoU의 어떠한 내용도 명시적, 묵시적 포기, ADB 설립협정에 따라 부여된 ADB 특권 또는 면책의 수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4 효력 발생 일자: 본 MoU는 위임받은 각 당사자별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며, (i) 당사자들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갱신되거나, (ii) 한 당사자가 6개월 전 서면 종료 통지를 안내하지 않는 한 2년 간 유효하다.

5.5 개정: 본 MoU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5.6 독립의사결정: 본 MoU의 어떤 조항도 ADB와 정부의 개별적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5.7 자금 제공 및 관리: 본 MoU 내용에 따른 각 당사자의 자금 제공, 관리 및 기타 재원 방침은 당사자별 관행 및 절차에 따라 별도의 서면 합의에 의해 이행된다.

5.8 분쟁 해결: 본 MoU의 해석 및 시행에 따른 당사자 간 모든 갈등은 제3자, 국내외 법원 또는 재판소의 회부 없이 당사자들 간 자문 및 협상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5.9 명칭, 상징 및 상표: 어느 당사자도 타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다른 당사자, 산하기관 및 연계기관의 명칭, 상징, 상표 또는 약어를 상업적 또는 공적 전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각 당사자는 본 MoU에 기반한 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개 정보 문서에서 타 당사자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는 데 동의한다.

5.10 기밀 유지: 본 MoU 조항 및 기록되거나 보존되는 모든 정보는 기밀이 아니며, 공개될 수 있다. 다만 수시로 수정되는 ADB의 정보 접근 정책 및 정부의 공개 정책에 따라 공개 예외가 될 수 있다.

5.11 지적 재산권: 당사자들은 MoU에 따른 활동이 지적 재산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 a) 당사자들은 활동의 성격과 각 당사자에 의해 만들어진 재정적, 지적 기여에 기초하여, 별도의 서면 협의를 통해 적절한 지적 재산권 조항 규정을 위한 협상 및 합의에 동의한다.
- b) 각 당사자는 본 MoU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타 당사자와 공유하는 각각의 기존 자료 또는 업무 내용에 대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2023년 5월 3일 대한민국, 인천

대한민국 정부

아시아개발은행

이름 : 추경호

이름 : 마사츠구 아사카와

직책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책 : ADB 총재

날짜 : 2023.5.3.

날짜 : 2023.5.3.

주: 비공식 번역본임

자료: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